#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9

발의연월일: 2024. 6. 17.

발 의 자:박 정·어기구·강유정

이기헌 · 송옥주 · 김정호

김병기 · 김현정 · 민병덕

문금주 · 김남근 · 소병훈

이언주・정준호・유동수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 두고 있으나,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 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 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한편 유사하게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,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20조 및 제21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원은"을 "조정원에 두는 협의회(이하 "조정원 협의회"라 한다)의 위원은"으로, "임명하거나"를 "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, 시·도에 두는 협의회(이하 "시·도협의회"라 한다)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"위원장은"을 "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"으로, "위촉한다"를 "위촉하고, 시·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"로 한다.
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 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 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

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21조제2항 중 "위원장은"을 "위원장 및 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제22조제6항 중 "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"를 "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·도지사가"로 한다.

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한다"를 "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, 시·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및 시·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및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각호 외의 부분 중 "제4항"을 각각 "제5항"으로 한다.

- ③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납품업자등이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.
- 1. 조정원 협의회
- 2. 대규모유통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·도 협의회
- 3. 납품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·도 협의회

제26조제7항 중 "공정거래위원회에"를 "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, 시·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·도에"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	제20조(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
및 구성) ① (생 략)	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
	<u> 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</u>
	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
	다)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
	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(이하
	"시·도"라 한다)에 협의회를
	<u>둘</u> 수 있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
	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
	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
	여 고시할 수 있다.
<u>②·③</u> (생 략)	$\underline{4} \cdot \underline{5}$ (현행 제2항 및 제3항
	과 같음)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	⑥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(이하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	"조정원 협의회"라 한다)의 위
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	<u>원은</u>
거래위원회 위원장이 <u>임명하거</u>	
<u>나</u> 위촉한다.	
	임명 또는 위
	촉하는 사람이 되고, 시·도에
	<u>두는 협의회(이하 "시·도 협의</u>

- 1. ~ 4. (생략)
- ⑤ <u>위원장은</u>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
#### ⑥ ~ ⑩ (생 략)

- 제21조(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저 위촉제한) ① (생 략)
  - ② 공정거래위원회 <u>위원장은</u>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 촉받은 사람이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 여야 한다.
- 제22조(협의회의 회의) ① ~ ⑤ 저 (생 략)
  - ⑥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 ⑥

회"라 한다)의 위원은 조정원의		
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	
중 시・도지사가 임명 또는		
1. ~ 4. (현행과 같음)		
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-		
<u>위촉하고, 시·도 협의</u>		
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		
위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		
하거나 위촉한다.		
$\underline{\$}$ $\sim$ $\underline{\textcircled{12}}$ (현행 제 $6$ 항부터 제 $1$		
0항까지와 같음)		
1121조(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		
위촉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위원장 및		
<u>시·도지사는</u>		
∥22조(협의회의 회의) ① ~ ⑤		
(현행과 같음)		

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<u>공정거래위원회</u>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(생략)

제25조(조정의 신청 등) ①·② 저 (생 략)

<신 설>

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 정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분쟁당사자 에게 알려야 한다.

장 또는 시·도지사가
⑦ (현행과 같음)
l25조(조정의 신청 등) ①⋅②
(현행과 같음)
③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
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
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
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
호의 협의회 중 납품업자등이
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
한다.
1. 조정원 협의회
2. 대규모유통업자의 주된 사업
장이 소재한 시·도 협의회
3. 납품업자의 주된 사업장이
소재한 시・도 협의회
<u>4</u>
<u>하며 조정원 협의회</u>
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, 시

•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

- ④ (생략)
-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, 파산절차 참가, 압류 또는 가압류, 가처 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 된 것으로 본다.
-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.
- 1. 2. (생략)
- 제26조(조정 등) ① ~ ⑥ (생략)
  - ① 협의회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공정거래위원회에</u> 조정의 경위,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

<u>여야 한다</u> .	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	
<u></u> ⑥ 제5항	
,	
<u> </u>	
<u>.</u>	
1. • 2. (현행과 같음)	
제26조(조정 등) ① ~ ⑥ (현행	
과 같음)	
⑦	
<u>조정원 협의회의 경</u>	
<u>우 공정거래위원회에, 시·도</u>	
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	
<u>및 시·도에</u>	

원회 및 시·도에 이를 통지하

통보하여야 한다.	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